

청렴^한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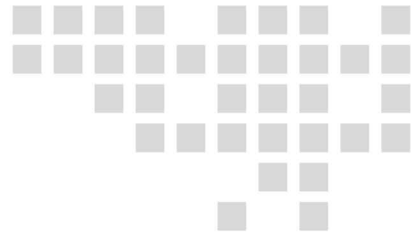
2018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2018. 2. 13. (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Contents

I. 우리의 청렴수준	1
1. 국제사회가 평가한 우리의 청렴수준	3
2.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6
II. 청렴정책 추진방향	9
1.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11
2.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체계	12
III.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13
1. 범국가적 종합적 반부패대책 추진 체계 구축·운영	15
2.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대책 후속계획 추진	17
3.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19
4.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22
5. 행동강령 개정으로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정착	27
6.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34
7.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37
8.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41
9.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44
10. 부패·공익신고 제도 및 사후 통제기능 활성화	50
[불입 자료]	63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I. 우리의 청렴수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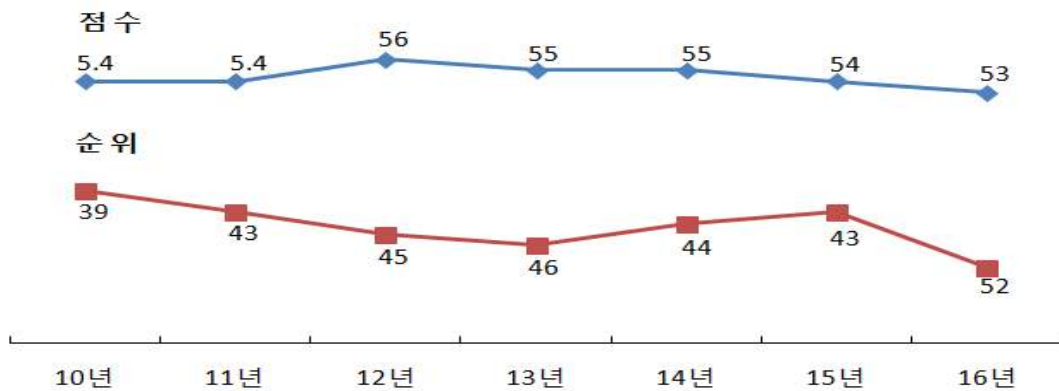
국제사회가 평가한 우리의 청렴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국 중에서 52위

○ '15년도와 비교하여 점수와 순위 모두 하락

※ CPI 점수 1점 하락, 국가순위 9단계 하락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5개국 중 29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였으며, 점수는 OECD 평균(68.6점)에 비해 15.6점 낮음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OECD	22/30	22/30	26/34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 아시아·태평양 국가 26개국 중에서는 9위 기록

※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일본, 부탄, 대만, 부르나이 다음에 위치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7년도 국가경쟁력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29위 유지

○ 하지만, CPI 반영 항목인 뇌물공여·부패비리과 정부 투명성은 40위권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IMD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경쟁력 순위	22/59	22/60	26/60	25/61	29/61	29/63	-
뇌물공여·부패비리	32	28	31	32	34	40	↓ 6
정부 투명성	29	29	33	40	43	46	↓ 3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7년도 국가경쟁력 지수도 전년과 동일한 26위 기록

○ 부패 관련 세부 항목들이 국가 경쟁력 순위에 비해 저조하고, 특히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항목은 137개 국가 중 98위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경쟁력 순위	19/144	25/148	26/144	26/140	26/138	26/137	-
공공자금의 유용	58	62	67	66	69	58	↑ 11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50	57	52	46	52	45	↑ 7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33	137	133	123	115	98	↑ 17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7년도 국가부패지수의 순위는 작년과 동일(16개 국가 중 8위), 점수는 악화

- PERC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아래의 강점과 약점을 지적
 - (강점) 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부패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약점) 전직 대통령과 비선 실세, 대기업 간의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정책적 노력이 성과로 연결 미흡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점 수	6.90	6.98	7.05	6.28	6.17	6.38
순위/전체대상국	11/16	10/17	9/16	9/16	8/16	8/16

□ 세계부패바로미터(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의 '17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76% 기록** (세계 101위/116개국, 아시아태평양 15위/15개국)

- 이는, 실제 부패경험률(3%)과 대비되는 결과(7위/116개국, 세계평균 6%)
-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부패경험률을 기록한 국가의 CPI는 70점 내외로 우리나라는 약 17점이 저평가

< II 세계부패바로미터 결과('17년) >

구분	전체평균	한국	호주	독일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홍콩
부패경험률(%)	6	3	4	3	3	2	2
'16년 CPI(점수)	43	53	79	81	61	62	77

⇒ 우리나라 청렴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정부 투명성 향상, 권력형 비리 해결 및 정책 성과 체감 등 지적된 문제점 해결에 집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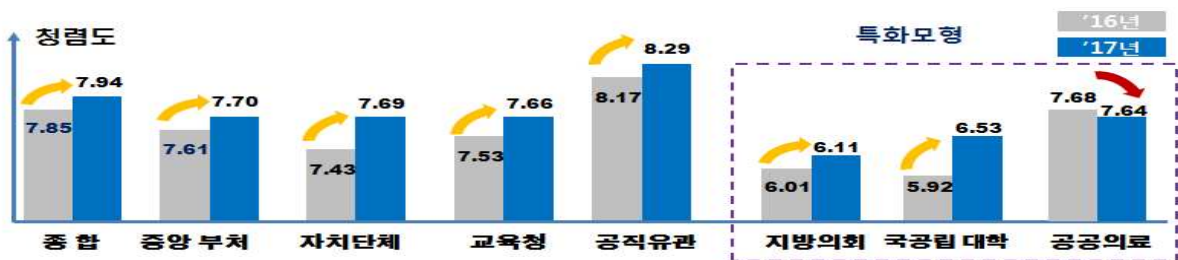
2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전체 종합청렴도가 상승하고 기관 유형별 대부분이 새정부 출범 이전보다 청렴도가 상승하였으나, 공공의료기관은 소폭 하락

※ 종합청렴도 7.94점으로 전년보다 0.09점 상승, '12년 모형 개편 이후 최고 점수



- (외부청렴도) 금품제공 경험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인식도가 개선되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체감효과 발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항목별 현황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년 대비
금품제공률	0.70%	0.70%	0.70%	0.46%	△34.3%
향응제공률	0.73%	0.76%	0.84%	0.36%	△57.1%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	8.98점	9.03점	0.05점 상승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70점	8.64점	8.80점	8.86점	0.06점 상승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9.07점	8.90점	8.99점	9.04점	0.05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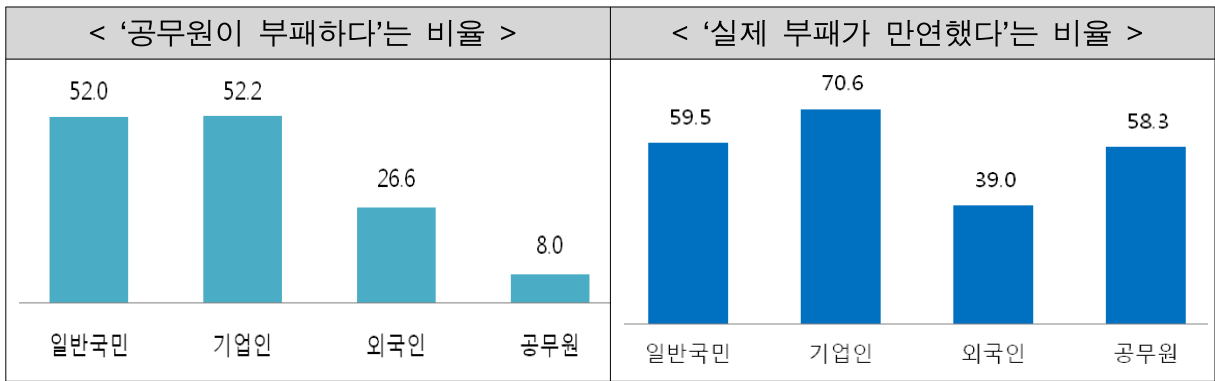
- (내부청렴도) 모든 기관 유형에서 하락, 과거 관행으로 묵인되던 행위들을 부패로 인식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인식이 표출

※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 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8.7%로 전년 대비 각각 0.8%p, 1.2%p 증가함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 민감성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부패 관행이 존재하므로 청탁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 해소 대책의 지속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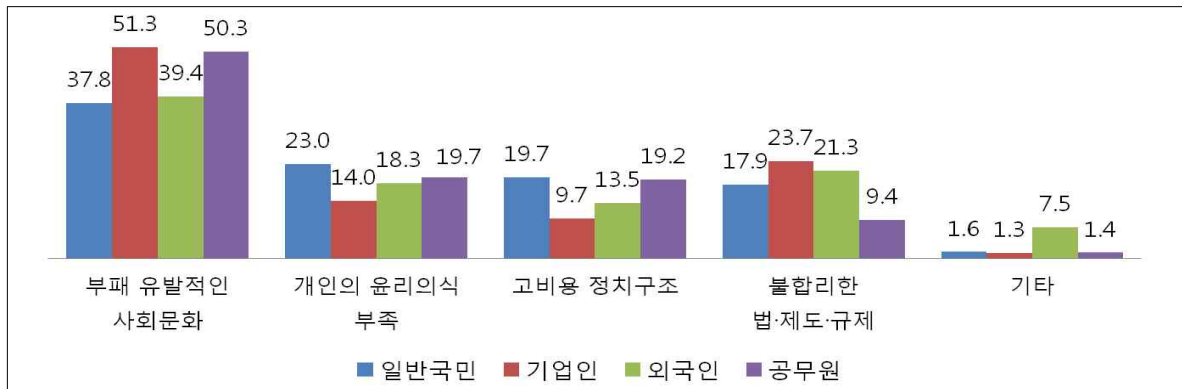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17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일반국민 52.0%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8.0%만이 부패하다고 응답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59.5%), 기업인(70.6%), 공무원(58.3%)은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 (부패발생 원인) 일반국민(37.8%), 기업인(51.3%), 외국인(39.4%), 공무원(50.3%)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대상별 응답률 >



⇒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부패 사회문화 개선 필요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Ⅱ. 청렴정책 추진방향

1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음. 문재인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지표가 되어야함 ('17.9.26,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뻗쳐있는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여야만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고, 비로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 ('17.8.28, 대통령 핵심정책 보고)

□ 범정부적 반부패·청렴 정책기조 강화

-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 반부패가 핵심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부패 해결을 요구

□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

- 공직자·국민 등 사회전반에서 청렴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으로 채용·인사 등 관행화된 부패를 개선해야할 필요성 증가
-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체계 강화 등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추진 필요

□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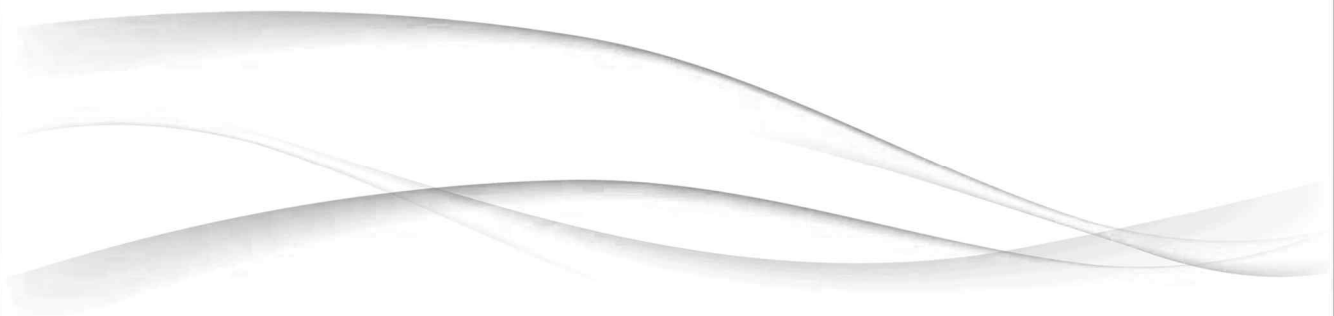
-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지속 발전하여 왔으나, 민생에 영향을 주는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대책 미흡
-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여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정치, 민간기업 등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 추진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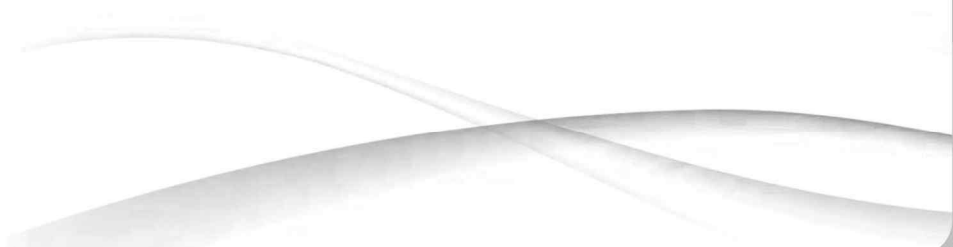


4强 추진전략	10대 주요정책과제
반부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추진	1. 범국가적 종합적 반부패대책 추진 체계 구축·운영
	2.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대책 후속계획 추진
	3.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제도의 혁신	4.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5. 행동강령 개정으로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정착
	6.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민관 협업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7.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8.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제도 개선에 근거한 반부패 역량 강화	9.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10. 부패·공익신고 제도 및 사후 통제기능 활성화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1

범국가적 종합적 반부패대책 추진 체계 구축·운영

- ◇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장기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반부패 개혁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의 동력 확충
 - * 국정과제2. '반부패개혁'의 세부과제로 포함

□ 범정부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수립

- 국민 의견, 기관별 대책*을 기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중점과제와 자체 추진과제 선정 등 체계적 로드맵 수립

※ 중앙부처 등 93개 기관이 기관별 대책(총 225개 반부패과제)을 수립하여 제출

<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주요 분야 및 중점과제(예시) >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부패방지 추진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 추진체계 운영 • 시민참여·소통을 통한 정책운영
공공분야 반부패시스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예방 인프라 구축 • 공공분야 취약분야 개선
민간분야 반부패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경영시스템 정착 • 민간부문 취약분야 개선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감시 활동 및 처벌 강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수준 향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 내실화 • 반부패 국제협력 및 대외 청렴이미지 제고

□ 민·관 협업을 통한 반부패정책의 총괄·조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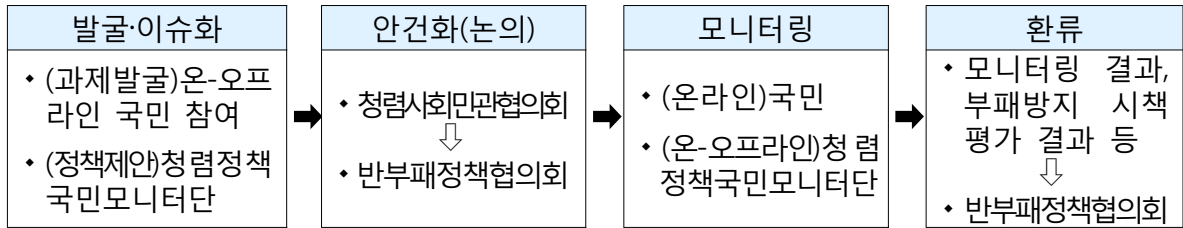
- (공공분야) 권익위가 간사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적시성 있는 안건 선정, 후속조치 관리 강화 등 내실있게 운영
 - 「반부패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 확대 방안 논의,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기타 현안 논의 등 반부패 파트너십 발전

*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상정 안건 검토,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 논의

- (민간분야)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제발굴에서 평가까지 반부패 정책 전(全) 과정에 실효적인 국민참여 구현

* 공공(권익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과 민간(경제계·직능대표, 시민단체, 언론·학계, 공익대표자) 30명으로 구성

< 국민의 반부패 정책 제안·평가 등 참여 절차 >



□ 감사관 회의를 통한 정책의 확산과 체계적 이행관리

- (각급기관 감사관) 「부패방지 5개년 계획」 등 반부패 청렴정책의 확산과 추진과제의 실행
- (권익위) 감사관실과 협업·지원을 통해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이행관리 및 국민참여 평가 실시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계획했던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현황을 확인하여 평가(상반기, 하반기 2회)
 - 각급기관별 정책 이행상황을 정부포털·각부처 홈페이지에 게시, 국민 생각함과 청렴사회민관협의체를 통해 국민참여 평가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에 대한 검토 요청시 기관별 과제의 세부내용, 추진 일정 등의 신속한 검토(2월말 예정)
- 종합적 반부패 대책 中 기관별 추진과제의 적극적 이행(연중)
 - 각급기관의 연초 청렴업무계획에 대책 내용을 반영하여 이행
-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이행현황 확인시 자료제출 등 협조

2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대책 후속계획 추진

- ◇ 공공분야에 만연한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 근절 특별조치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채용 관련 비리 근절대책 지속적 이행관리

□ 채용비리 후속 조치('18.1.29. 발표)의 철저한 이행

-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에 대한 처벌·징계 및 퇴출 등 후속 조치 확행
 - 수사 의뢰 및 징계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즉시 업무 배제
 - 검찰 기소시 즉시 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절차 착수
 - ※ 수사 결과 피해자 특정시 원칙적으로 구제 추진 및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추진
- 채용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관련 법률 개정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공기관 등의 내부 규정에 개선반영 여부 확인 및 독려
 - ※ 비리연루 임직원 퇴출 및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명문화, 가족채용 제한 및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채용절차 공개 등

□ 채용비리 후속조치 확행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 청렴도 측정 등을 활용한 지속적 점검 체계 운영
 - 채용비리 신고센터, 정부 합동 점검, 감사원 감사, 검·경 수사 등에서 채용비리가 적발·확인된 기관은 청렴도 측정에 최우선 포함
 - 청렴도 모형·설문 항목 개선, 공공분야 채용비리 관련 정보 진단·제공

- 각급기관의 채용 제도개선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개선 착안) 기관별 인사·채용 규정 및 행동강령에 채용공정성 강화 규정 마련, 관련 정보의 보존·공개 강화 및 정기적인 감독 체계 구축
 - (우수사례 확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자율적 개선수준을 반영하고, 우수 사례는 ‘시책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공유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의 확산 정착
 - (부정청탁 등록체계 구축) 채용청탁 발생시 등록·신고토록 하고, 부정한 청탁 내용과 조치결과의 정기적 공개 추진
 - (인식 개선) 고위공직자 및 인사담당자 대상 채용청탁 금지 교육 강화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 구축

- 국민신문고(on-line) 및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off-line)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설 운영
 - 비리 혐의가 짙은 사건은 수사의뢰 등 신속·엄정처리
-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채용비리 개선사항의 지속적 이행점검

[협조 요청 사항]

- 채용비리 이첩·송부사건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후관리·신고자 포상 등 후속조치 협조(해당기관)
- 채용비리 근절대책 분야별 과제추진 이행현황 제출 및 주기적 실태조사 협조(해당기관)
- 인사·채용 관련 법령 및 내부인사규정 개정 등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 권익위에 설치된 「채용비리 신고센터」 홍보(전 공공기관)

3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 ◇ 부패친화적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와 협력강화를 통해 국가청렴이미지 제고 추진
- ◇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대외 신인도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기업환경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민간부문의 부패수준 개선을 위해 **담합 근절, 기업회계투명성 제고, 준법경영 분야 등 우선 개선**
 - ※ 대인신인도 제고를 위한 부처별 과제 선정(~3월), 자체추진 및 이행점검(~9월)
- 기업인의 경영 애로사항 청취, 개선과제 발굴 등 다각적 소통 방안 강구
 - ※ 주한영국상의간담회(2.8), 외국인 CEO 간담회(4월), 기업인 부패인식도 심층 면접조사(5월~6월), 8개 주한외국상의 간담회(7월, 11월) 등

□ 반부패라운드 대응 및 해외 반부패정책 전수 확대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UN 반부패협약 2주기 심사(니우에 점검) 및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심사(6~8월 실사) 등 국제공조에 동참
 - * '18년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주제 : 공기업 투명성 및 이해충돌 방지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제6차, 5.7~16), 국제기구 및 외국 반부패기관과의 정책 협력 확대
 - ※ MOU 체결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 인니('06년), 베트남('10년), 몽골('10년), UNDP('15), 이라크 및 카타르(예정)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한 체계적 홍보 강화

-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에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주기적 제공체계 운영
 - ※ 주요 반부패 동향에 대한 영문자료집 이메일 발송, 주요 기관은 방문 면담
- 반부패 주제 국제회의*에서 우수 제도와 성과를 소개
 - * OECD 뇌물방지협약(프랑스), 국제반부패회의(IACC, 덴마크), APEC 반부패투명성 WG회의(파푸아뉴기니),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총회(오스트리아) 등

[협조 요청 사항]

- 부패유발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제도개선 적극 추진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 협조 (외교부, KOTRA 등)
-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협조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기관 방문 시 협조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관세청,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 반부패 국제교육기관인 IACA 홍보 차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님
- 국제사회 홍보용 기관별 반부패 우수시책 제공 협조(전 공공기관)

참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ACA) 교육프로그램 안내
-----------	-----------------------------------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개요 >

- '10.10월 개관한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서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소재
- 부패방지 업무 전문화, 반부패 연구·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 및 공유, 부패방지 업무 및 부패사건 수사의 효율성 제고 목적

□ '18년도 정규 프로그램(Standardized Programme)

No	프로그램명	주 제	교육기간	신청기간	비 고
1	반부패 석사과정	반부패 분야 전반	'18.10.1 ~ '20.12.9	~ 5.31	학위과정
2	반부패컴플라이언스 및 공동행동 석사과정	민간분야 반부패	2019~2021	추후 공지	학위과정
3	국제 반부패 여름아카데미	반부패 분야 전반	6.29 ~ 7.6 (8일)	~ 3.19	권익위 직원 '11~'12년 참가
4	지방반부패 훈련	지방정부의 반부패 문제	7.9 ~ 13 (5일)	추후 공지	
5	조달분야 반부패 훈련	조달분야 부패예방 및 척결	7.16 ~ 8.17 (5주)	~ 4.5	1주간 캠퍼스, 나머지는 원격 교육
6	Best of 시리즈	반부패 전반	7.3~4 (2일)	추후 공지	저명 교수/전문가 특강

※ 자세한 내용은 IACA 홈페이지(www.iaca.int) 'Academic Program' 및 'Open Training' 참조

□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Tailor-made Programme)

- 부패 척결 및 예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기관·기업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기간, 언어, 장소 등에 대해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프로그램 마련

<권익위 대상 교육(사례)>

커리큘럼	교육기간	교육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청렴도 및 정치 부패, 부패예방, 국가 및 국제 우수사례 소개 ○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 및 반부패 기관 방문 	'13.11.19 - 21	6명
	'14.8.28 - 9.3	26명
	'15.6.10~18	26명
	'16.4.20~28	26명
	'17.5.25~31	26명

※ 자세한 내용은 IACA 홈페이지(www.iaca.int) 'Tailor-made Training' 참조

4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 국민·공공기관·기업 등 대상 집중 교육·홍보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각계의 제도 정착을 지원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홍보 등 기관별 적용 지원

○ 권익위가 개발·보급한 자료를 활용, 각급기관별 자율교육·홍보 강화

※ 리플렛, 카드뉴스, 포스터 등 기 배포자료 적극 활용

<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18.1.17. 공포·시행) >

- (선물)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화훼포함)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인정(선물에서 유가증권은 제외)
- (경조사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인정
- (외부강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시간당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 간의 시간당 상한액을 일치시키고(100만원),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서약서)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청탁방지 담당관 워크숍 실시(5~6월)

○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전파하여 기관 자율 개선노력 지원(상시)

□ 각급 기관과 권익위간 협업을 통한 해석의 신속성 향상

- (각급기관) 기관 질의는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해석기준이 정립된 빈발·반복 질의는 일차적으로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이 해석과 답변 실시
- (권익위) 새로운 유형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및 기존 해석사례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권익위가 담당

※ 빈발 질의·오인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지속 전파로 각급 기관 지원

□ 부정청탁 방지체계 운영 강화

- 14개 부정청탁 분야별 빈발청탁 및 편법행위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분야별 취약·개선 필요 요소를 발굴·관리
 - 신고처리의 적정성 등 부정청탁 금지제도의 운영 실태조사시 병행 실시
 - ※ 신고 접수·처리 및 교육현황 등 서면조사(2월) 후 현장점검(20개 내외 기관)
 - ※ 점검사항 예시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의 직무배제 등 이행 여부, 금품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대가성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법령상 종결 대상이 아닌 사건 임의종결 등
 - 각급기관은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정기적 공개체계 구축·운영
-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각종 위법·편법 행위 관련 주요 사례·개선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공유

[협조 요청 사항]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전 공공기관, 1.17. 기통보)
 - 경조사비·선물 가액범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등 개정 취지가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
 - 권익위 제공 각종 교육·홍보자료를 **소속·산하 기관 등에 전파**
 - ※ 각급 학교·학교법인은 소관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전파(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해당 소관 기관에서 전파)
 - ※ 언론사는 언론사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파
 -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 경조사비 가액범위 하향, 원칙적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등을 충분히 교육**
 - ※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및 선물 등 수수 금지
- **공공기관 운영 실태조사 협조**(전 공공기관, 2~4월)
 - 신고 접수·처리,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협조
 - ※ 서면조사는 2월(전 공공기관), 현장조사는 3~4월(20개 내외 기관) 예정
 - ※ 현장조사 점검사항 예시 : 금품 제공자에 과태료 미부과, 대가성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법령상 종결사유가 없는 위반사건 임의 종결 등
-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참석**(전 공공기관, 5~6월)
 - ※ 별도 공문시행 예정
-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질의창구 일원화 시행 관련 의견수렴 회의 참석**(전 공공기관, 3월)
 - ※ 별도 공문시행 예정

□ **시행령 개정사항(요약)**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

□ 참고 자료

구 분	내려받기 경로	자료형태
해설서	<p style="text-align: center;">권익위 홈페이지 (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p>	한글 파일
직종별 매뉴얼	<p style="text-align: center;">권익위 홈페이지</p>	한글 파일
교육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권익위 홈페이지</p>	PPT 파일
카드뉴스	<p style="text-align: center;">권익위 홈페이지</p>	PDF 파일
리플릿	<p style="text-align: center;">권익위 홈페이지</p>	PDF 파일
포스터	<p style="text-align: center;">권익위 홈페이지</p>	PDF 파일

5

행동강령 개정으로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정착

-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4.17. 시행)으로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

□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 추진

○ 각급 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지원 및 심사 강화

-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18.2월 보급 예정)을 참조, 신속한 개정 추진

<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 | | |
|--------------------|--------------------------|
| 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②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③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④ 가족 채용 제한 |
|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⑥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 ⑦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⑧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 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도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시 반드시 반영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 금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첨부된 표준안을 참조하여 반영

※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도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청렴성을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개정사항 교육을 위한 행동강령 책임관 워크숍 등 적극 참여

- 행동강령 업무편람, 법령집, 교육용 시청각 자료 등 제작·배포
- 청렴연수원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에 반영, 자율적 교육 실시 유도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5~6월)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실시

□ 공직유관단체 전반으로 이해충돌방지 제도 확산

- 개편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적극 활용
 - 공직유관단체 기관 특성에 맞도록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영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함께 배포('18.2월)
-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은 행동강령 제도의 정착에 역량 집중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18.3월, 9월) 적극 활용

□ 취약분야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

- 취약기관·시기·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점검 실시
 - (취약기관) 청렴도 하위기관, 신규 행동강령 적용대상기관 등
 - (취약시기) 설·추석 명절, 지방선거 등
 - (취약분야) 행동강령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제도 이행현황 및 부패 관련 사회적 이슈 제기 분야
- 각급 기관의 자체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 전개 유도
 - ※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에 점검실적 등 반영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개정 및 제·개정 사항 권익위 통보
 -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4.17. 시행) 사항,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 시행) 사항 반영
- 행동강령 개정 사항 전 직원 대상 교육
- 행동강령 책임관 워크숍,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등 참석
 - ※ 워크숍,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등 세부 계획 별도 안내 예정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자료제출·현장점검 등 협조
- 기관별 취약시기 자체 행동강령 이행점검 실시

참고 1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

□ 대상기관 및 개정규정

- (대상기관)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 공공기관
 - ※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인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
- (개정규정) 기관별 행동강령
 -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도록 위임함

□ 개정내용

- 가상통화 관련 거래 제한 기준 마련
 - (거래 유형)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행위,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 (가상통화 정보 취급 직무유형)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수립 관련 직무, 가상통화 관련 수사·조사·검사 등 관련 직무 등
 - ☞ 기관장이 가상통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추가 가능
-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 사실 신고 근거 마련
 -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화
- 기관장의 조치 사항 규정
 -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 의무화

<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예시) >

제〇〇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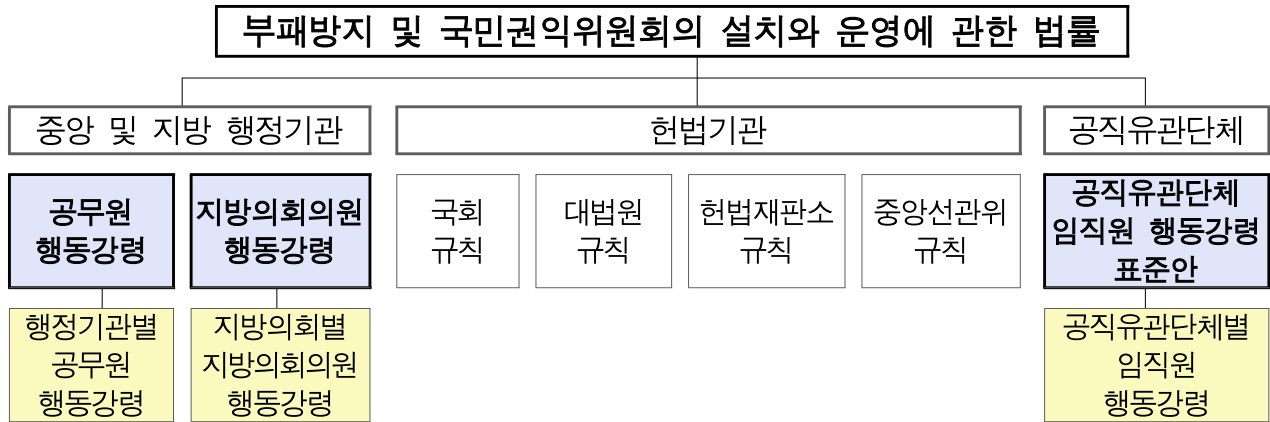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참고 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요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연혁 및 운영체계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으로 공직 사회 윤리수준 제고 및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03년 제정
 -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대통령령, 헌법기관은 자체규칙, 공직유관 단체는 내부규정(사규)을 근거로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총 21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 수수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4)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5의2)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5의3) ■ 가족 채용 제한(\$5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5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5의6) ■ 특혜의 배제(\$6)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7)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 인사청탁 등의 금지(\$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 2) ■ 알선·청탁 등의 금지(\$11)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의 제한(\$12)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3) ■ 사적 노무 요구 금지(\$13의2) ■ 금품등의 수수 금지(\$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5)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 경조사 통지 제한(\$17)

1. 개정안 개요

구분	조문	개정안	개정 내용
신규 도입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서의 취임 등 금지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제11조 제3항	민간 분야 부정청탁 금지	▪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현행 보완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16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

2. 신규 도입 사항

-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제5조의2)
-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을 금지(제5조의3)
- 고위공직자, 인사담당자 등이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본인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행위 금지(제5조의4)
- 고위공직자, 계약담당자 등이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본인,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제5조의5)
-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부패 차단을 위해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의 사적 접촉시 신고(제5조의6)
- 공무원의 민간영역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등 금지(제11조제3항)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차단을 위해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3. 현행 규정 보완 사항

-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규정한 **현행 규정 보완**(제5조)
 -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서면 신고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조치토록 함
-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금지하는 **현행 규정 보완**(제16조)
 - 공무원 자신,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금전차용,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체결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6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별 청렴수준 진단·환류를 강화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
- ◇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청렴도 미흡기관의 반부패 추진 역량 제고를 지원

가.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진단·평가 강화

□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객관성 개선

- (평가대상) 청렴도 취약기관 추가, 부패빈발 업무의 측정업무 반영 등 청렴도 측정 모형 개선
 - ※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사항(예시)
 - (대상기관) 채용비리 발생 기관을 우선적으로 추가, 중앙행정기관 중 '17년 청렴도 측정 제외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추가
 - (측정업무) 기관유형별 부패 빈발업무 분석, 측정업무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청렴도 점수 등을 종합하여 부패취약분야 업무 발굴·조정
- (모형보완) 학계, 기관담당자, 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18.2월)을 통해 측정 모형의 과학적 타당성 제고
- (명부점검) 자체청렴도 결과를 성과급 등 내부평가와 연계하여 오염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의 측정 명부 집중 점검

□ 기관 반부패 역량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활용

-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확대 및 지원 강화
 - (대상) 청렴도 하위기관(4,5등급), 채용비리·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은 평가대상에 우선적으로 추가

- (지원)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 컨설팅, 우수시책 제공 등 기관맞춤형 지원을 강화

※ 권익위 홈페이지에 각급 기관 우수사례 게시·확산

○ 반부패 정책환경을 반영한 평가과제 조정

- (추가과제) 반부패 국정과제, 채용비리 등 현안 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및 청렴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가

※ 기관별 반부패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 채용비리에 대한 기관 자체적 대책 마련, 부정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점검 실천 여부 등

- (계속과제) '17년 평가시 달성도가 낮았던 과제는 금년에도 지속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적극적 이행 독려

[협조 요청 사항]

- '17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3.30(금) 까지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담당자 참석(2월) ※ 별도공문 기시행(2. 7)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3월) ※ 별도공문 시행 예정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3월)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
-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6월)에 따른 대상명부 등 제출
- '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4월) ※ 교육훈련 대상자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공문 시행 예정
- '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별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 (4월말, 10월말)

나.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 청렴컨설팅 운영 방식 개선

- 권익위가 대상기관을 1:1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권역별 컨설팅 그룹(1멘토 2멘티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 다수 기관이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룹방식으로 운영하고 권익위는 멘토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 청렴도 상위등급 유지 기관과 하위등급 기관을 매칭하여 청렴도 개선 노하우와 우수시책 사례 지도·전파
- 장기적으로 권역별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을 양성하여 자율적·안정적 청렴컨설팅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청렴컨설팅 실시 계획

- 멘토-멘티 기관 간 협업으로 기관의 업무, 제도, 행태 등을 분석하여 취약분야 도출 등 반부패 역량 진단 실시(4~5월)
-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멘토기관 등의 자문을 통해 기관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도출(6월)
- 컨설팅 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공통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공동컨설팅과 멘토-멘티기관이 수행하는 개별컨설팅 병행(7월)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3월초, '17년 청렴도 측정기관)
 - 권역별 멘토-멘티 기관을 자율적으로 구성(1멘토 2멘티 기준)한 후 권익위에 신청, 자문위원단에서 컨설팅 그룹 선정(3월 예정)
-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과 대안 마련 등 컨설팅 과정에 적극 협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7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고,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 각급기관 대한 청렴교육 지원 강화
- ◇ 공직자·국민이 함께 청렴콘텐츠를 만들어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

가.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 교육대상별 맞춤형 집합교육 과정 운영 강화

-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생 유형, 공직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세분화·운영(연중)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직원 / 교사 등 구분
 - * 4개 세부분야, 16개 과정, 3,235명 대상 집합교육 운영

<참고 : 청렴연수원 집합 교육과정 개편안 >

세부분야	교육과정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교육 (6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직 과정 ▶ 신규자 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 승진실무자 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 승진관리자 과정 ▶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 교장 과정
강사양성 및 교사대상 교육 (5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양성 기본과정 ▶ 강사양성 전문과정 ▶ 강사양성 강의시연평가 과정 ▶ 강의역량 향상과정 ▶ DREAM 교원 직무연수
청렴역량 교육 (2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역량 이해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 청렴역량 강화과정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3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과정 ▶ 공직자 과정 ▶ 언론인 과정

□ 영상물 등 콘텐츠 제작·배포 및 청렴 사이버교육 운영

- (교육콘텐츠) 영상물 및 강의안 등 기관 자체교육용 콘텐츠 배포
 - ※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용 다큐멘터리 동영상(1월), 강의안(하반기)
- (사이버교육)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총 13회 운영(2~12월)
 - ※ 1회당 수용인원 확대하여 사이버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직자는 교육기간 중 언제든지 수강 가능토록 개선 완료

□ 청렴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 점검 실시
 - ※ 2017년도 기관별 청렴교육 추진 실적은 2월말까지 제출, 기관별 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실시(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교육 운영 실적 반영
 - 기관평가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을 유도하고 운영 실적의 활용도 제고

[협조 요청 사항]

- '17년도 교육운영 계획 및 실적을 '18.2.28.까지 제로미시스템으로 제출 협조(전 공공기관)
 - ※ 제로미 미사용 기관은 공문으로 제출(수신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 ※ 지난 해 '16년도 교육실적 제출 시 '17년도 교육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한 기관은 '17년도 교육운영계획 제출 제외
- 청렴교육강사를 활용한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운영(전 공공기관)
 - 청렴교육강사 인력풀(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소속직원을 활용

※ '청렴교육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경우, 교육 종료 후 반드시 각급기관 담당자가 교육실적(교육내용, 인원, 시간 등)과 만족도를 입력

※ 실적 및 만족도 미입력 시 차년도 청렴교육강사 풀 활용 일부 제한

○ 각급기관의 기본교육과정(신규자·승진자 등)에 청렴교육 교과목 필수 배정(전 공공기관)

※ '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인사혁신처) 참고

○ 소속직원에 대한 청렴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공지 요청(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 내 소속기관 등에 교육일정, 신청 절차 등을 적극 공지

※ 청렴연수원 집합·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2월)

나.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국민·공직자가 청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각 분야별 입선 이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수여

※ 관심도 제고를 위해 훈격 상향을 추진 중(위원장상 → 국무총리표창)

< 참고 : 청렴콘텐츠 공모전 >

① 양질의 콘텐츠 발굴을 위해 다양한 형식의 청렴스토리 공모

- (수기·소설)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경험한 청렴 관련 일화 또는 창작 스토리를 산문 형식으로 구성

- (단편영화 등 콘텐츠)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10분 내외의 단편영화, 웹드라마 등 영상형식으로 제작

- (독후감) 청렴 수기·소설을 읽고 소감 등을 제출

- ②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 콘텐츠·강사 발굴
- (법·제도에 대한 강의) 청렴에 관한 법·제도 등을 강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구성
 - (청렴소양 강연) 청렴과 관련된 본인의 견해와 경험 등을 강연형태로 구성
- ★ 세부 일정 및 분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공문 참조

□ 국민·공직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의미있는 반부패·청렴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대상 포스터 배포, SNS 활용 등 다각적 홍보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적 홍보 협조(전 공공기관)
 - 각급 공공기관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전 안내 배너 설치, 청사 내 게시판 등에 포스터 부착 등
 - 양질의 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소속직원·국민 참여 유도
 - ※ 세부 계획 및 홍보 협조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청렴교육 강의·강연 경연대회’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대회 수상 등 우수성과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청렴한 거름망’ 홍보영상 기관별 활용 협조(전 공공기관)
 - 기관별 실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변경 제작하여 활용
 - ※ 권익위 홍보담당관실로 문의시 영상 송부 예정

◇ 국민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 수립으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반부패 정책성과의 체감도 제고

□ 국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국민공감 반부패 정책 수립

○ (온라인) 국민생각함을 활용,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제안·평가 등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생각함 내에 별도의 ‘반부패·청렴’ 온라인 국민참여 공간 마련 예정(상반기)

○ (오프라인) 반부패종합대책 및 파급효과가 큰 각 부처의 중요대책에 대해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정책 모니터링 실시

- 해당기관은 현장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

* 권익위가 지역·성별·연령·직업 등 고려하여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운영

□ 중앙·지역 단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운영

○ (중앙)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운영

- 국민제안 및 정부 반부패대책 등에 대한 의견제시, 추진상황 점검·평가

- 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부패 정책아젠다를 상시 논의하는 등 체계적 운영

※ 권익위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국민중심 반부패·청렴 정책 평가체계 개발, 민간분야 부패 실태조사 실시 등 적극 지원

○ (지역) 지자체, 공공기관, 각계대표 등으로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 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적극 전개

- 권역·광역 단위로 우선 구축 → 시·군·구 단위로 확대

- 중앙 민관협의회의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중앙-지역 민관협의체간 간담회 개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은 연계·협의 등 소통 강화
 - ※ 지역 민관협의체 구축 지원을 위해 운영방안 마련 및 협조요청(2월), 권역별 설명회 개최(3월), 지역별 추진단 구성 등 지원

□ **청렴사회를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 사회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선포하고, 사회 각 부문 및 분야별, 지역 단위별로 협약 확산 및 실천의제 선정·이행

< 청렴실천운동(예시) >

부문	사업내용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 사업 · 반부패의 날(12.9.) 기념 반부패주간 연계·운영 · 청탁 안하고 안받기 실천운동 등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문화 캠페인 전개 · 청렴실천 릴레이 서약 운동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청렴문화운동 · 기업윤리의 날(6.2) 기념 기업윤리주간 운영 · 윤리경영 우수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및 홍보
직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기념일 연계 청렴문화 실천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날, 상공의 날, 철도의 날, 사회복지의 날 등 · 직능·분야별 청렴윤리강령 제정·운영 등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지역의 역사 속 청렴인물 발굴·홍보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축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실효성 확보로 공공기관 청렴환경 조성**

-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 등을 통한 제도 운영 정보 공유·협력 기반 강화 및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지원
-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청렴시민감사관 등의 활동성과 제고
 - ※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제도개선 권고, 수용 실적 등 활동성과 평가 강화

□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 지원

- 기업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17년 개설한 '기업윤리 e-러닝센터' 교육 콘텐츠 확충 및 **활용** 홍보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정책홍보 → 기업윤리자료
- 공·사기업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대한 「윤리경영 사내전문가 양성 과정」 등 기업의 **윤리경영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
 - ※ ('17년) 200여개 기업 → ('18년) 500개 기업

[협조 요청 사항]

- 반부패·청렴 정책 관련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국민의 온·오프라인 제안·평가 활성화 협조(전 공공기관)
 -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모니터 활동 시 적극 협조(해당기관)
 - ※ 국민생각함에 별도의 반부패·청렴정책 국민참여 메뉴 신설 예정(상반기)
- 지역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전 공공기관)
 - 권역·광역 단위로 우선 구축 → 시·군·구로 확대
 - ※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운영방안 배포(2월), 권역별 설명회(3월)
- 지역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전개(전 공공기관)
 -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반부패 실천의제 선정·이행
- 청렴시민감사관, 옴부즈만 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전 공공기관)
- 사내 교육시 '기업윤리 브리프스' 및 '기업윤리 e-러닝센터' 제공 콘텐츠 활용(공직유관단체)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정책홍보 → 기업윤리자료

9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 4대 부패취약분야(△민간부패, △공기업, △지방행정, △재정낭비)의 법·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
- ◇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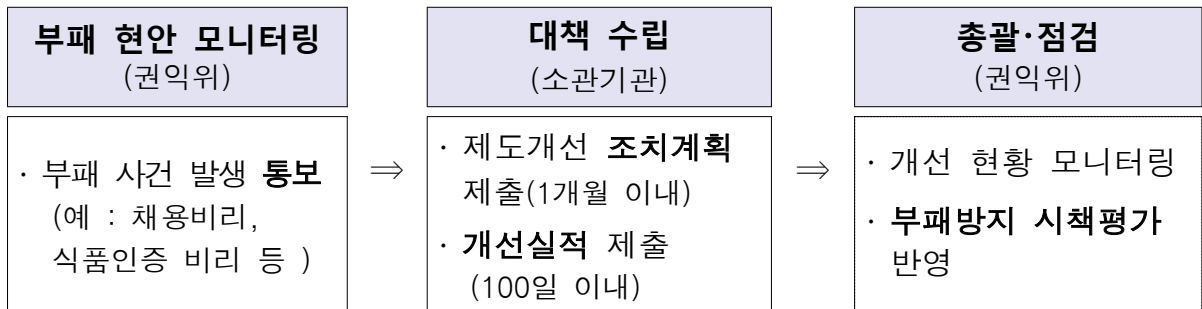
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4대 부패취약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

- (민간부패) 뇌물수수, 담합 등 민간분야의 고질적 부패를 유발하는 제재 규정의 미비 및 자율 통제장치의 형식적 운영 등 개선
 - ※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 감경 제한, 기업의 준법경영 시스템 실효성 제고 등
- (공기업) 공공기관, 관련 협회, 재취업 퇴직자 등의 유착고리에 따른 폐쇄적 사업 관행 차단 방안 마련
 - ※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선정·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 민간위탁·대행 방식의 각종 안전관리제도 개선 등
- (지방행정) 지자체의 인·허가, 계약, 인사 등과 관련한 특혜 유발 요인 해소로 지방선거 전후의 비리 발생 소지에 선제적 대응
 - ※ 지자체 임기제 인력 채용·관리의 공정성 제고, 지방의회 예산 집행 및 행정협의회 부담금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재정낭비) 일자리·복지 관련 예산 등의 유사·중복 지원, 부정 수급 방지로 민생예산을 적기적소에 전달
 - ※ 각종 요양급여 부당청구 비용의 환수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물 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

□ **부패발생 시 각급기관의 자율적·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마련**

- 주요 부패현안 발생 시 소관기관이 관련 법·제도 신속 개선
 - 권익위가 통보한 부패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조치계획 및 개선 실적 제출(반부패정책협의회 보고 사안, '17.9월)



- 일자리,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도 취약 업무는 기관별 자율 개선과제로 선정·추진(연 1회 제출)

< 주요 부패취약분야 >

- 보조금, 연구비 등 국가재정 누수 부패
- 계약, 인·허가, 공사, 예산·회계, 부과·환급 관련 사안
- 인사·채용 비리, 소속기관 및 자회사 등의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 업무추진비 남용, 복지비 과다지출 등

□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조치기한이 도래한 권고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실적 입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행(미입력) 과제는 수시로 이행 독려(월1회)
 - ※ 매월 말, 이행실적 입력 대상과제(조치기한 도래) 기관별 별도 송부 예정
- 권고과제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에 곤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추진 지원

[협조 요청 사항]

<각급기관 자율개선>

- 부패현안 제도개선 조치계획 및 개선 실적 제출(해당 기관)
 - 조치계획 제출 : 통보 후 1개월 내
 - 개선실적 제출 : 통보 후 100일 이내

- 기관별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제출(전 공공기관, 연 1회)
 - ※ 세부 제출 일정은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참조

<제도개선 사후관리>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실적 등 기한 내 입력(전 공공기관)
 - 추진계획서 입력 : 권고 후 1개월 내
 - 이행실적 입력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 ※ 웹 주소 : <http://jedo.acrc.go.kr>(제도개선 기관포털)
 - ※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붙임3 참고)

- 이행실적 미흡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해당 공공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 등 컨설팅 희망기관은 공문 제출(5월)
 - ※ 컨설팅 신청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 예정(4월)

-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현황 조사·점검 시 협조
 -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정비

□ 재정누수, 특혜제공 등 취약분야의 현행법령 개선

- 선심성으로 재정을 지원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상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 개선
 - 해당 분야의 법령 전반에 대한 분석, 서면·현장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

<관련 사례(예시)>

- ◆ 포괄적 규정에 따른 선심성 재정지원 : 지자체가 조례상 포괄적 지원규정을 근거로 각종 단체·기관에 지원하여 재정누수 및 부정청탁 가능성 상존
- ◆ 공공병원의 특혜성 진료비 감면 : 공공병원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산하 직원·배우자 외에 형제·자매, 지인까지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 6개 적십자병원에서 3년간('14~'16) 총 1억 7,2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남(김명연 국회의원 발표자료)

□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 제·개정 법령은 청탁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행위, 권한남용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
 - ※ 기관 제출자료, 통계 등을 근거로 중점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유관 기관 대상 정책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개선안 마련
-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제·개정사항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의뢰 시 해당 규정 평가 실시
 - 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기관은 필요 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능
 - ※ 평가 의뢰 절차, 관련서식 등은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참조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점검 및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개선권고 이행여부에 관한 서면조사, 현장방문점검으로 권고사항의 적극적 이행 도모
 - ※ '13~'16년도 권고과제 이행여부를 서면으로 조사(상·하반기 각 1회) 후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예정
 -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각 기관의 자율평가 역량 강화 촉진
 - 컨설팅 수요 조사를 통해 기관 선정 후 시책평가·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 방법·사례 설명 및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 '17년도 실적 : 12개 기관, 268명 참여(4개 지자체 88명, 8개 공직유관단체 180명)

[협조 요청 사항]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제출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재정지원사업, 진료비 감면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 및 실태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 소관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중앙행정기관)
 - 제정 법률은 필요시 입안단계에서 권익위에 사전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협업을 통한 평가 가능
- 자치법규·내부규정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권익위로 부패영향평가 의뢰(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개선권고 이행점검, 컨설팅]

- 개선권고 이행점검 협조(해당 공공기관)
 - '13년~'16년 제·개정 법령 및 현행 법령 권고사항 이행여부, 미이행 사유,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서면조사 시 회신
 - ※ 추후 현장방문 대상 기관은 법령 소관 부서와의 면담 등 협조
- 찾아가는 컨설팅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지자체, 공직유관단체)
 -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수요 제출
 - ※ 별도 공문 시행 예정('18년 하반기)
 - 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이후 '17년 자치법규·내부규정 자율평가 현황 등 기초자료 요청 시 제출

- ◇ 신고사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보상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신고 활성화 추진
- ◇ 부패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징계양정 결정기준을 혁신하고, 신고제도 운영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가. 신고처리 내실화 및 홍보·교육을 통한 신고 활성화

□ 신고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이첩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대상) 6개월 이상 미처리 이첩사건

(방식)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점검하고, 필요시 기관방문 등 현장점검 실시

○ 이첩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시 재조사·설명요구 확대 추진

□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교육·홍보 활동 전개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분야 집중신고 운영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국민관심을 제고하고 신고활성화 유도

※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1~4월), 연구개발비 등 정부보조금(5~7월)

○ 재정누수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실태조사(상·하반기)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예방·차단을 위한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제도개선 협업 추진

※ 부정수급 발생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술연구개발·복지시설·요양급여 등 빈발분야 집중조사 실시, 결과분석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은 제도개선 연계

- TV·신문·라디오광고 및 기관협업광고(전광판·간행물·온라인배너), KTX·지하철·휴게소 등 국민접점 홍보를 통해 부패·공익침해 경각심 제고
- 공익신고기관의 공익신고제도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 업무 담당자에 의한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차단
 - ※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 과정에 공익신고제도 내용 반영
-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생활안전 분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직종별 법정교육, 홈페이지 배너 등을 활용하여 신고·보호제도 집중 홍보

< 생활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예시) >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인원·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자동차 불법개조 • 자동차 제작 결함사항 은폐
건설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사용 • 건설기술자 명의 대여 또는 미등록 업체 불법 하도급
소방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시설·피난시설 미설치 또는 변경·훼손 등 부실관리 •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식품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식품의 제조 및 유통 • 식품인증마크 불법 사용

□ 부패·공익침해신고 예방 및 보호·보상 우수사례 발굴·전파

- 부패·공익침해 예방사례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은 적극적으로 언론보도 추진
 - ※ (사례) 현대차 엔진 제작결함 내부신고로 제작결함 자동차 24만여대를 강제 리콜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 예방('17년)
-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보상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전파
 - ※ 서울시 '안심변호사 대리 신고제도',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 등

[협조 요청 사항]

- 신고 접수·처리 시 처리절차 및 기관별로 운영 중인 보호·보상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당기관)
 - ※ 각급 기관별 신고 접수·처리 시 부패신고 보·포상금 최고한도액 등 각급 기관별 신고처리 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
- 청탁금지법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 안내 시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 보상신청 안내(전 공공기관)
- 이첩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첩사건 점검 시 협조(해당기관)
 - ※ 담당자 교체 시 이첩 사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반기별 이첩 사건 점검 공문시행 시 자료 협조
-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고제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전 공공기관)
 - ※ 신고 접수 창구는 청렴신문고 모바일 버전 개발에 따라 '부패·공익신고 앱' 대신 '청렴신문고'를 활용토록 홍보 실시
- 생활안전 관련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교육·홍보
 - ※ 콘텐츠는 권익위에서 제작·제공할 예정(해당기관에 별도 협조요청 예정)이며, 자체 콘텐츠 제작도 무방
- 신고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전파(전 공공기관)
 -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평가 반영 검토
- 청렴교육 등 각급 기관 의무교육 등에 공익신고제도 콘텐츠 반영
 - ※ 콘텐츠는 권익위에서 제작·제공할 예정(해당기관에 별도 협조요청 예정)이며, 자체 콘텐츠 제작도 무방
- 공익신고제도 운영현황 조사시 자료제출 협조(해당기관, 2·8월)

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 취업제한제도 안내 강화 등을 통한 재취업 위반자 발생 예방

-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취업제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취업가능여부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사전 확인토록 안내 절차 강화

※ (참고)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은 비위면직자에게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비위면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하도록 명시

-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재취업 원천 차단

※ 직원 채용공고문 등을 통해 채용 결격사유를 안내하고,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채용후보자의 비위면직자 여부 스크린 실시

< 인사규정 결격사유(예시) >

제0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통해 경각심 고취

※ 각급 공공기관의 취업제한제도 교육·홍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

□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제도의 규범력 확보

- 비위면직자등 명단 누락 방지를 위한 각급 기관의 명단관리 철저

※ 비위면직자등 명단 고의누락,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부실·비협조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실시

- 법원 판결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위면직자등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
 - ※ 특히, 각급 공공기관은 소속 퇴직공직자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원회에 반드시 통보
-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분야***, 업무관련성 검토 부실기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취업제한 위반여부 정밀검증
 - * (금융분야) 금융기관, (국방분야) 방산업체, (건설분야) 건설업체 재취업 등

□ 취업심사 방식 개선

- 현행 사후심사방식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같이 **사전허가 방식으로 개선 검토(법 개정 사항)**
 - ※ 취업심사 사전승인 등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협조 요청 사항]

-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 규정 도입 등을 통해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반드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전 공공기관)
 - 취업제한 안내 실시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등) 5년간 보관 및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요청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 ※ 취업제한제도 미안내로 인해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소송 등 문제제기 가능성 사전 차단

-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규정 및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공공기관 재취업 차단(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채용후보자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16.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확대된 취업제한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정 반드시 재검토 후 미흡시 개정 필요

- 취업제한제도 교육·홍보 실시 및 우수사례 발굴·통보(전 공공기관)

-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철저 및 발생 현황 통보(전 공공기관)
 - 상·하반기 각 1회 비위면직자등 명단 취합시 제출기한 엄수
 - ※ 해당 기관 소속 퇴직공직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비위면직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위원회 통보

- 업무관련성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해당기관)
 - ※ ‘업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 회신한 기관 중 검토가 부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추진
 - ※ 퇴직 전 기관과 재취업기관간 업무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업무관련성 심층검토

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보상·포상 확대

□ 불이익 사전예방 및 불이익조치 사후관리

- 신고자 색출, 인적사항 공개 등 신분노출 행위를 신고 접수·처리단계부터 철저히 예방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18.2.1.)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분이 노출된 경우 불이익 조치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고자 및 잠재적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등 선제적 대응
 -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불이익조치로 생활고를 겪는 신고자를 위한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 등
 - ※ 신고자에 대해 보호제도 활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잠재적 불이익조치자에 대해 위반 항목별 처벌 규정·사례 등을 안내
- 불이익조치로 생활고를 겪는 신고자에게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여 신고자의 경제적 피해를 적기에 구제

□ 기관의 자율적 신고자 보호 강화 유도

- 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에 신고접수 및 결과 통보 시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의무화 내용 반영
 - ※ '17.12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안내 규정을 추가한 「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 수정안 참고
- 신고자 보호 실적 등의 성과가 있는 기관에 대해 시책평가 연계 등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 (예시)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신분보장 실적, 신고자의 요청에 따른 전보·전직 등 인사교류 실적, 부패신고자 채용 등

□ 신고 보·포상금 지급 확대

- 부패신고 수준(최대 30억원)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
-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급사유 확대
 - ※ 현재는 공익신고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판결이 있어야만 보상금 지급 가능
- 청탁금지 위반행위, 채용비리 등 공익기여가 큰 사례 및 외부기관 신고 추천을 통해 포상대상 적극 발굴

[협조 요청 사항]

- 신고자 색출, 불이익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교육 및 신고 접수·처리 단계별 유의사항(*붙임참고) 전파(전 공공기관)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사항 교육·홍보 필요('18.2.1부터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징계요구)
-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를 의무화 하도록 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 개정(전 공공기관)
-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해당기관)
 - ※ 채권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부패수익 환수절차 착수 등) 조속 이행 및 보상 예비사건의 환수현황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등
- 청탁금지 위반행위 등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극 추천(전 공공기관)

라. 부패정보의 심층 분석 및 공개 확대

□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강화

- 공공기관 부패공직자 징계·감면 현황에 대한 부패정보 분석 및 실태 조사를 통해 기관유형별·부패규모별 징계수준 편차 도출
 - ※ 부패금액 일정 금액(예: 100만원) 이상 사건의 경징계 여부, 상훈 등에 의한 기계적 감경 등
- 징계적정성 확보를 위한 분석정보 공개, 홍보 및 이행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징계양정 결정 기준 혁신
 - ※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14년 권고)의 이행점검 병행

□ 국민생활 밀접분야 신고분석을 통한 부패현안 개선

-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료(의약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 및 4대 안전(소방·건설·교통·식품) 부패·공익신고의 주요사례 및 시사점 분석·공개
 - ※ 의료분야 집중신고기간(1.15.~4.15.) 운영결과 분석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빈발유형 및 제도적 취약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등 근본적 방지방안 마련

□ 신고제도 운영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 제고

- 신고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자 기소, 부패수익 환수 등 혐의가 적발된 주요 신고사건의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
 - ※ '권익위 홈페이지>부패방지자료>신고사례'를 통해 혐의가 적발된 주요 이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위반기관명을 포함하여 매월 공개하고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공공기관 신고제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렴허브포털(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설계·구축시 활용하여 국민의 신고편의성 제고
 - ※ '청렴신문고(국민)·제로미(공공기관)·청렴e시스템(권익위)'을 신고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렴허브포털'로 재구축('18~'21년, 143억 소요)

[협조 요청 사항]

- 제로미시시스템에 부패행위로 징계·면직된 부패공직자 현황 입력
(2월·8월, 전 공공기관)
- 기관별 징계적정성 확보, 기계적 감경 배제 등 처벌정상화 방안
이행(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 신고제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해당기관)
 - ※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등 실태조사 방향을 부패방지시책평가 설명 시
추후 안내

□ 신고 접수 단계

- 신고 접수 시 신분공개 동의 여부 반드시 확인 및 보호제도 안내
 - 신분공개 부동의시 신고자 및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에 관한 노출·공개·보도 금지
 -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
 - ※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신고자에게 언론제보, 직장계시판 게재 등으로 신고내용이 공론화되는 경우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피소 우려가 있음을 안내
- 피신고자가 신고자인 것처럼 가장한 전화문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 접수 후 전화응대 등 관리 주의

□ 신고 사건 심사 및 조사 단계

<신고 사건 관리>

- 신고 사건은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모두 별도 관리
 - 신고내용만으로 신고자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신고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관리 철저

<현장조사>

- 현장 조사 시 신고서 등 서류를 복사·휴대 시 신분노출 우려로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해서 참조
- 관련자 조사 시 노트북 및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 기관 장비 사용시 컴퓨터 사용내역 삭제, 자료 파쇄 등 보안에 유의

○ 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 및 기관 방문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신고 관련 공문 등 작성 시 대국민 공개 등으로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 외에 신고 사건 검색·열람으로 신고자 신분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기관 방문 시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여 신고 내용이 사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신고자 안내·연락>

○ 신고자가 처리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리결과를 속단하여 언론기관 등에 제보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처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통보

○ 신고자에게 연락 시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조사결과 통지 등은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으로 발송

○ 신고자에 대한 신변 위협, 불이익 조치 사실(불이익 우려 포함)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신고 사건 이첩, 송부 시 유의 사항

○ 신고자 요청 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열람 제한 등 조치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 제9조에서 제12조 준용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시 신고자 성명 및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삭제 처리

□ 신고사건 사후관리 단계

○ 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제도 안내문 제공

○ 신고사건 종료 후에도 신고사건 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 제한 등 철저한 관리 실시

[붙임 자료]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2. 분야별 업무담당자
3. 부패방지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및 계획
4. 제도개선 관련 서식

붙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협조사항		일정	대상기관
1. 범국가적 종합적 반부패대책 추진 체계 구축·운영			
①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에 대한 검토 요청시 기관별 과제의 세부내용,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검토	2월말 (예정)	전 공공기관
②	종합적 반부패 대책 中 기관별 추진과제의 적극적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이행현황 확인시 자료제출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2.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대책 후속계획 추진			
①	채용비리 근절대책 분야별 과제추진 이행현황 제출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②	채용비리 주기적 실태조사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채용비리 이첩·송부사건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후관리·신고자포상 등 후속조치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④	인사·채용 관련 법령 및 내부인사규정 개정 등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⑤	권익위에 설치된 「채용비리 신고센터」 홍보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①	부패유발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제도개선 적극 추진 및 결과 국내·외 홍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연중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인혁처,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③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기관 방문 시 협조	연중	법무부, 대검찰청, 인혁처, 조달청, 관세청, 청렴도 측정 우수 기관
④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⑤	국제사회 홍보용 기관별 반부패 우수시책 제공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4.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①	시행령 개정 내용 소속·산하 기관 등에 전파·교육	1.17. 기통보	전 공공기관
②	공공기관 운영 실태조사 협조	2~4월	전 공공기관
③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참석	5~6월	전 공공기관
④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질의창구 일원화 시행 관련 의견수렴 회의	3월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5. 행동강령 개정으로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정착			
①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개정 및 제·개정 사항 권익위 통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행동강령 개정 사항 전 직원 대상 교육	연중	전 공공기관
③	기관별 취약시기 자체 행동강령 이행점검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④	행동강령 책임관 워크숍,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등 참석	3월, 9월	해당 공공기관
6.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진단·평가 강화			
①	'17년도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	3월말	청렴도·시책 평가 대상기관
②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	2.21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③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 담당자 워크숍 참석	3월	청렴도·시책 평가 대상기관
④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3월)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	3~5월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⑤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6월)에 따른 대상명부 등 제출	7월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⑥	'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4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⑦	'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별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	4월, 10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①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3월 초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②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과 대안 마련 등 컨설팅 과정에 적극 협조	연중	컨설팅 대상 기관
7.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①	'17년도 교육운영 계획 및 실적을 제로미시스템으로 제출	2월 말	전 공공기관
②	청렴교육강사를 활용한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운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③	각급기관의 기본교육과정(신규자·승진자 등)에 청렴교육 교과목 필수 배정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소속직원에 대한 청렴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공지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①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적 홍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청렴교육 강의·강연 경연대회’ 참여	하반기	전 공공기관
③	‘청렴한 거름망’ 홍보영상 활용	연중	전 공공기관
8.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①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 반부패정책 제안·평가 활성화	하반기	전 공공기관
②	지역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운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지역별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전개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반부패 실천의제 선정·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청렴시민감사관의 실질적 활동성과 위주 운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사내 교육 시 ‘기업윤리브리프스’ 및 ‘기업윤리 e-러닝센터 콘텐츠 활용 협조	연중	공직유관단체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9.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input type="checkbox"/>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①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실적 등 기한 내 입력 (추진계획서) 권고 후 1개월 내 (이행실적)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이행실적 미흡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	5월	이행실적 미흡기관
③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정비			
①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②	소관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연중	중앙행정기관
③	제·개정 자치법규·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의뢰 (필요 시)	연중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④	개선권고 이행 및 이행점검 협조	연중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⑤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자료 제출 협조	7~12월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0. 부패·공익신고 제도 및 사후 통제기능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신고처리 내실화 및 홍보·교육을 통한 신고 활성화			
①	신고 접수·처리 시 처리절차 및 기관별로 운영 중인 보호·보상제도 등에 대한 안내 강화	연중	해당기관
②	청탁금지법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 안내 시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 안내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이첩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첩사건 점검 시 협조	연중	해당기관
④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고제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생활안전 관련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 교육·홍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⑥	신고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전파	연중	전 공공기관
⑦	청렴교육 등 각급 기관 의무교육 등에 공익신고 제도 콘텐츠 반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⑧	공익신고제도 운영현황 조사시 자료제출 협조	2월, 8월	해당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①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반드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②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규정 및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취업제한제도 교육·홍보 실시 및 우수사례 발굴·통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철저 및 발생 현황 통보 - 상·하반기 각 1회 비위면직자등 명단 취합시 제출기한 엄수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업무관련성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	연중	해당기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보상·포상 확대			
①	신고자 색출, 불이익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 교육 및 신고 접수·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전파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 개정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연중	해당기관
④	청탁금지 위반행위 등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적극 추천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부패정보의 심층 분석 및 공개 확대			
①	제로미시스템에 부패행위로 징계·면직된 부패공직자 현황 입력	2월, 8월	전 공공기관
②	기관별 징계적정성 확보, 기계적 감경 배제 등 처벌정상화 방안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③	공공기관 신고제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붙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박은령	반부패·청렴정책 총괄	044) 200-7612	044) 200-7939
	임한나	부패인식지수 대응 및 제고대책 수립	044) 200-7616	
	나현성	부패인식지수 대응 및 제고대책 수립	044) 200-7619	
	백현수	청렴컨설팅, 청렴클러스터 추진	044) 200-7623	
	박세희	청렴교육 점검 및 각종평가 반영, 청렴교육 강사 지원	044) 200-7615	
	제로미 유지보수팀	제로미 입력 관련 시스템 문의	044) 200-7570	
청렴조사 평가과	원현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2	044) 200-7940
	박정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5	
	홍혜연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 200-7630	
부패영향 분석과	권오성	부패영향평가 업무 총괄	044) 200-7656	044) 200-7941
	한건희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044) 200-7663	
	이주현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044) 200-7657	
	이진희	개선권고 이행점검, 컨설팅	044) 200-7655	
청탁금지 제도과	박정구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서·매뉴얼	044) 200-7704	044) 200-7944
	강경의	부정청탁금지법 교육·홍보	044) 200-7706	
	송두원	부정청탁금지법 교육·홍보	044) 200-7709	
	윤수성	부정청탁금지법 공공기관 실태조사	044) 200-7708	
청탁금지	박주미	해석업무 총괄	044) 200-7642	044)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해석과	권기현	공문질의, 해석자문단 운영	044) 200-7643	200-7960
	김시형	공문질의, 홈페이지	044) 200-7649	
	장성규	공문질의, 국민신문고	044) 200-7648	
	김재현	공문질의, 청렴신문고	044) 200-7644	
	박선미	공문질의	044) 200-7626	
행동강령과	박기준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044) 200-7676	044) 200-7942
	박을미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 200-7681	
	오경민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044) 200-7670	
	김덕희		044) 200-7678	
심사기획과	박홍상	부패신고 정책 총괄	044) 200-7692	044) 200-7943
	송영희	부패신고 정책 기획	044) 200-7694	
	안진희	부패신고제도 교육·홍보 이첩사건 사후관리	044) 200-7695	
	한세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6	
	안병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7	
부패심사과	김은경	부패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720	044) 200-7946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센터	백수경	복지·보조금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582	044) 200-7977
	김선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044) 200-7584	
보호보상과	안문주	신고자 보상·포상 업무	044) 200-7743	044) 200-7947
	이덕진		044) 200-7744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현순정		044) 200-7745	
	권문택	신고자 보호업무(부패, 복지·보조금,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044) 200-7747	
	김준철		044) 200-7748	
	이진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교육	044) 200-7742	
	박태진		044) 200-7740	
	공익심사 정책과	장은경	공익신고 정책	
정은수		공익신고자 보호법	044) 200-7752	
김경희		공익신고 사건	044) 200-7755	
이유경		공익신고제도 교육·홍보	044) 200-7757	
공익보호 지원과	한희선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총괄	044) 200-7772	044) 200-7949
	나조운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73	
	윤선호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79	
	연나영	공익신고 보·포상금 업무	044) 200-7770	
청렴연수원 교육기획과	김일문	청렴교육 제도 및 청렴콘텐츠 지원	043) 901-6142	044) 200-7973
	정진덕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및 사이버 코스웨어 제공	043) 901-6131	
	정종미	청렴교육강사 제도 운영	043) 901-6143	
	박주원	청렴콘텐츠공모전 운영	043) 901-6144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정혜정	청렴 집합교육 운영 전반	043) 901-6124	
	이준	청렴 집합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043) 901-6125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황은희	청렴 집합교육 일정수립 및 교육생 모집	043) 901-6126	
청렴연수원 청렴콘서트F	박중하	기관대상 청렴교육 운영	043) 901-6152	
제도개선 총괄과	최명식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 200-7212	044) 200-7921
	장호성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 200-7218	
국제교류 담당관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UN반부패협약, 홍보용 우수시책 발굴·전파	044) 200-7153	044) 200-7916
	문소희	G20 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 방지협약	044) 200-7158	
	강미영	국제반부패아카데미	044) 200-7155	
민간협력 담당관	최현민	민간협력 업무 기획·총괄	044-200-7162	044) 200-7917
	최승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044-200-7164	
	김연주	기업윤리경영 지원	044-200-7166	
	이종성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2)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044-200-7165	
	박아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기업윤리경영 지원(2)	044-200-7167	

붙임 3

부패방지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및 계획

	2016~2017년까지 개정내용	2018년도 개정내용 및 계획
부패 방지 권익 위법	<p>◇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처분절차 일시정지 도입('16.3월 개정, '16.9월 시행) ▶ 사학부패까지 신고·보호범위 확대('17.4월 개정·시행)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종사자→누구든지) 및 인적사항 공개·보도시 징계요구권 신설('17.10월 개정, '18.2월 시행) 	<p>◇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언, 고소·고발까지 보호대상자 확대 ▶ 보호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신분보장조치 등에 대한 화해권고 도입 ▶ 신고로 인한 치료·이사비용 등에 대한 구조금 제도 도입 * 법제심사 완료('17.11.14.), 국회 제출('18.1.5.)
		<p>◇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시행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신분보장 처리절차 정비 * 법제심사('18.1.12.~1.17.), 차관회의('18.1.18.)
	<p>◇ 청렴도 조사 관련 법적 근거 신설 및 공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조사·평가 근거 명확화 및 컨설팅 실시 규정 마련 ▶ 청렴도 평가 결과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16.3월 개정, '16.9월 시행) 	<p>◇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 법제심사 완료('17.11.14.), 국회 제출('18.1.5.)
	<p>◇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 * ('16.3월 개정, '16.9월 시행) 	
	<p>◇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직자가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현행 비위면직자와 같이 취업을 제한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2016~2017년까지 개정내용	2018년도 개정내용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개념 명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권익위의 자료요구권 신설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시 과태료(500만원) 부과 ▶ 권익위 비위면직자 해임요구에 대한 거부 시 과태료(1천만원) 부과 <p>* ('16.3월 개정, '16.9월 시행)</p>	
공익 신고자 보호법 (공익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법률 추가(180개('11년)→279개('15년)→ 284개('17.10월 개정, '18.5월 시행)) ▶ '공공의 이익'을 신고대상분야로 추가 및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불이익조치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17.10월 개정, '18.5월 시행) ◇ 보상·포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피해구조 필요시 보상심의 전 구조금을 우선지급토록 긴급구조금 신설('17.10월 개정, '18.5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 신고·보호 대상법률 추가(35개) ▶ 전문가 대리신고 도입 <p>* 입법예고('17.11.17.~12.27.), 부처의견수렴 중, 법제심사(3~5월 중)</p> ◇ 보상·포상 확대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불이익조치 점검 ▶ 긴급 구조금 지급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p>* 입법예고('18.1.12.~2.21.), 부처의견 수렴 중, 법제심사(2~3월 중)</p>
부정 청탁 금지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액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 가액범위(5만원) 현상 유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인정 ▶ (경조사비) 가액범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인정 <p>* '18.1월 시행</p>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보완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보완 기간 확대(2일 → 5일) <p>* '18.1월 시행</p>

	2016~2017년까지 개정내용	2018년도 개정내용 및 계획
		<p>◇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공공기관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으나 향후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일원화 * (현행) 장관급 50만원, 차관급·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공직유관단체 임원 30만원, 5급 이하·그 외 직원 20만원 ▶ 국공립 교직원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언론사 임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민간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1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 * '18.1월 시행 <hr/> <p>◇ 공직자의 청렴의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 * '18.1월 시행
공직자영향권	<p>◇ 공직자의 청렴의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금지(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금지(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규정(삭제)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종전에는 직무 관련성 불문) 	<p>◇ 공직자의 청렴의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와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 ▶ 고위공직자는 임기 전 3년간 재직하였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고위공직자·인사담당자는 가족 채용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고위공직자 등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등)의 신고

	2016~2017년까지 개정내용	2018년도 개정내용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 50만원, 차관급·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공직유관단체 임원 30만원, 5급 이하·그 외 직원 20만원 ▶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대가와 상관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신고 * 종전에는 대가를 받은 경우만 신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음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 월 3회 이하로 제한 ▶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삭제) *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만 존치 * ('16.9월 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권한 및 지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와 금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신고 * 개정('18.1.16.), 시행('18.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보완기간 연장

붙임 4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3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과 제 명		기관명·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조치시한		담 당 자		
		연락처 · 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